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개인회생절차에 있어 법원의 면책불허가사유 추가 >
■ 장동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986호)

2024. 1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화 실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개인회생절차에 있어 법원의 면책불허가사유 추가	3
가. 개정안의 내용	3
나.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파산절차 및 개인 회생절차에 있어 면책불허가사유	3
다. 검토의견	6
2. 관계기관 의견	1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장동혁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9. 12.

(3) 회 부 일 : 2024. 9.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현행법은 개인회생 제도를 두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으나 일시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파산을 막고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제도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현행법을 근거로 운영되는 파산 제도나 민간자율협약에 따른 유사한 채무조정인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과 비교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그동안 국회와 법원은 개인회생의 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여주고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투기에 가까운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손실까지 개인회생 변제계획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제도적 결함으로 인하여 일부 법무사나 변호사들이 파산의 원인이 크지 않은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종용하는 광고를 올리고 있으며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해 도덕적 해이의 경험을 공유하는 글들이 온라인상으로 확대되고 있음.

특히, 채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은 도덕적 해이의 사례를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금융회사 등을 포함한 채권자 손실은 일반 국민들이 금융사를 통한 대출을 받을 때 신용원가로 반영되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등 국가의 경제적 질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여 국민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이에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과도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여 국민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원의 면책불허결정 사유에 ‘채무자가 과도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하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624조제3항제3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인회생절차에 있어 법원의 면책불허가사유 추가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개인회생절차에 있어 법원의 면책불허결정 사유에 ‘채무자가 과도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하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임(안 제624조제3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24조(면책결정) ①·② (생략)	제624조(면책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신설>	3. <u>채무자가 과도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u>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나.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에 있어 면책불허가사유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현행법”이라 함)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파산 신청을 하고 법원의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을 받는 ‘개인파산제도’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 일정 금액을 면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인회생제도’로 구분하고 있음.

개인파산절차에 있어 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의무 위반행위가 있는 등 일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하고(제564조제1항),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 있음(재량면책, 제564조제2항)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허가)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제651조·제653조·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 ②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한편,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일반면책, 제624조제1항),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①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②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하며, ③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면책 결정을 할 수 있으며(특별면책, 제624조제2항), 면책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제624조제3항)²⁾.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 ①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법원은 면책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의 면책불허가사유 비교>

개인파산절차(제564조제1항)	개인회생절차(제624조제3항)
1. 채무자가 제650조·제651조·제653조·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u>*개인파산절차와 달리 과다한 낭비 등으로 인한 과대한 채무 부담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아님.</u>

다. 검토의견

개정안은 개인회생절차에 있어 법원의 면책불허가사유에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하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인파산절차에서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의 면책불허가사유에도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임.

현행법은 개인회생절차에 있어 도박 등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법원은 도박행위로 인한 대출이나 손실의 규모가 크고 신청일에 근접하여 이루어진 사안에 대하여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제595조제7호)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제595조제6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거나³⁾, 일정기간 동안 도박행위에 소비한 금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총 변제액을 상향조정하여 처리하는 형태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⁴⁾.

이러한 점에 비추어 개정안은 최근 도박 등으로 지급불능에 이른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현실⁵⁾을 반영하고, 개인회생신청에 근접하여 도박 등을 통해 채무가 급증한 사안에 대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 5. (생략)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4) 서정원, “개인회생절차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검토”, 법조 제71권제4호(통권 제754호), 2022.8. 49-50면.

전주지방법원 2021. 5. 14. 2021개회100769 결정[채무자가 도박 손실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한 보정 권고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신청 후에도 계속 온라인 도박을 한 사안에서, 채무자가 월 급여를 40여만 원 줄여 진술한 점을 함께 고려하여 채무자회생법 제595조제2호(허위진술), 제7호(신청 불성실)에 의하여 신청을 기각함]

인천지방법원 2021. 9. 14. 2021개회11095 결정[채무자가 2020년 이후 대출받은 1억여 원 중 8,800여만 원을 온라인 도박에 지출하고 총 가용소득 6,000만원의 변제계획안(변제율 약 28%)을 작성한 사안에서, 채무자의 도박행위가 지급불능의 주된 원인으로 도박 지출액이 개인회생채권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변제율이 낮고 도박 지출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해 산정할 경우 변제계획안이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채권자의 회생을 전제로 채무자의 회생을 돕고자 하는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 등을 이유로 들어 신청을 기각함]

5) 로톡뉴스, ““돈 갚겠다” 약속하더니, 개인회생 신청하려는 사기꾼…내 돈은 어떻게 되나”, 2021년 7월 21일자 기사, 일요서울, “청년 “대출 갚고 싶어요”, 청소년 “도박 끊고 싶어요”“, 2024년 10월 2일자 기사 등 참조

하여 불성실한 신청으로 신청을 기각하거나 소비한 금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변제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운영해 온 제도 운영의 한계를 고려하여 개인회생절차 면책불허가사유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채무자의 제도 남용 요소를 최소화하여, 개인회생 제도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법원 결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개정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우선, 현행법상 파산절차와 달리 개인회생절차에서 과도한 낭비·도박 등을 통한 과다 채무 부담 사실 등을 면책불허가사유로 정하지 않고 면책범위가 확대되어 있는 이유는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게 하는 회생형 절차의 특징을 반영한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즉,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인바, 본질적으로 개인회생절차는 회생형 절차이고, 개인파산절차는 청산형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의 면책결정에 있어서 두 제도는 차이를 보이는데,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후 법원의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되는 반면⁶⁾, 개인파산절차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 한 변제 없이 면책이 되기 때문에⁷⁾ 개인파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 ①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차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허가)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제651조·제653조·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차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산의 경우 면책불허가사유를 광범위하게 규정한 반면, 개인회생의 면책 불허가 사유는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양 제도의 구조적 차이를 고려하여 개정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⁸⁾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의 차이>

	개인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제도 용이점	①자유재산(파산선고 후 새로 취득한 재산 등)으로 파산채권을 변제할 필요가 없음. 이러한 재산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가능. ②면책허가결정에 의해 채무 전부를 면책	①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음. ②파산선고로 인한 자격제한을 받지 않음. ③낭비·도박 등 파산절차에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용 가능함. ④채무자는 비면제재산을 그대로 점유·사용 가능함(개인파산절차에서는 청산과 채권자들에 대한 분배를 위해 파산관재인에게 인도).
부담적 요소	①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각종 자격제한을 받게 됨. ②면책불허가사유가 있어 면책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제생활의 회복이 어려움.	①최장 3년간 채무를 변제하여야 함. ②일정 규모(담보부 15억원, 무담보부 10억원)를 넘는 채무를 가지고 있는 자는 이용 불가함.

자료 : 전대규, 「채무자회생법(제2권)」, 법문사, 2024.1. 1690면.

다음, 개정안과 같이 개인회생절차의 면책불허가사유에 ‘채무자가 과도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하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경우 이미 파산절차의 이용이 어려운 해당 채무자들로 하여금 개인회생절차의 이용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8) 전대규, 「채무자회생법(제2권)」, 법문사, 2024.1. 1690면.

개인회생절차는 경제활동을 충실히 이행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하여 사회불안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회생절차의 면책불허가 사유 확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관계기관 의견

법무부는 개인회생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여 채권자 권리를 보호하고 제도 신뢰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개인회생절차는 일정 기간 장래의 소득으로 변제계획 이행을 한다는 점에서 파산선고시의 채무자 재산을 기준으로 공평하게 환가 및 배당하는 파산절차와는 차이가 있고, 채무자의 도박, 장비 등 사유는 개인파산절차 면책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데 개인회생에서도 면책받지 못하고 파산절차에서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개인의 재기 기회를 모두 박탈하게 된다는 점에서 개인의 절차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 독립적인 관리·감독기능을 통한 악용 방지 등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법원행정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의 필요성에 비추어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현행법상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의 면책불허가사유를 달리 규정한 입법취지를

9) 전대규, 「채무자회생법(제2권)」, 법문사, 2024.1. 1686면.

고려할 필요가 있고, 현행 개인회생절차 내에서도 실무상 채무 중 도박 등 사행성 소비에 사용한 경우 청산가치에 반영하거나 변제기간·변제율을 조정함에 있어 참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회생절차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058